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 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사업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
2. 국·시비 보조사업
3.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기술·전산·임상연구·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과 안전별 소속국장 중 3인 이내에서 안전별 수시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2.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기타 해당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되, 안전별 소속국장은 수시로 임명·해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① 위원회에 심의요청 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 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 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용역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용역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안 제3조)

나. 용역심의 대상 (안 제4조)

- 심의대상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학술용역 건당 2천만원 이상)

-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국시비보조사업 등은
심의생략 가능

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 11명 이내로 구성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별표 ></p> <p style="text-align: center;"><u>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u></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지원내역</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둘째 아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td> <td></td> </tr> <tr> <td>셋째 아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td> <td></td> </tr> <tr> <td>넷째 아이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2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p>< 별표 ></p> <p style="text-align: center;"><u>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u></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지원내역</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둘째 아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td> <td></td> </tr> <tr> <td>셋째 아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td> <td></td> </tr> <tr> <td>넷째 아이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2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첫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아이에게도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지원기준) 관련 별표에서 둘째아이 지원금을 2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98호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정부 금연정책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외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거리 내 간접흡연 피해 증가
- 나. 거리 내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별도의 외부 흡연시설(흡연부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
- 나. 사유지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
- 다.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게 규정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99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695,000원”을 “월 2,775,85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생 략)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u>월 2,695,000원</u> 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 <u>월 2,775,850원</u> -----.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조~제7조(생 략)	제4조~제7조(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원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상한선이 연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의결된 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기준(2014.11.3.)에 따라 2016년도 의원월정수당 지급액을 지급상한선인 3%로 인상하여 변경하고자 함. (※201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8%)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월 2,695,000원”을 “월 2,775,850원”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별지 3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17, 별지 18,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20, 별지 21과 같이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22, 별지 23과 같이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24, 별지 25, 별지 26과 같이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27과 같이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및 별지 제7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28, 별지 29와 같이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31과 같이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32, 별지 33, 별지 34, 별지 35, 별지 36, 별지 37, 별지 38, 별지 39, 별지 40, 별지 41과 같이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 서식을 별지 43과 같이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44와 같이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45, 별지 46, 별지 47과 같이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 48, 별지 49, 별지 50, 별지 5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p style="margin: 0;">년 월 일</p> <p style="margin: 0;">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p>위원장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div> </div>					

<별지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표 창 수 상 자 명 부

표창구분	발급번호	일자	소속(주소)	직위(직업)	성명	생년월일	비고

<별지7> 서울특별시 중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대학생아르바이트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 _____
연락처	전화
	핸드폰
	이메일
학 교 명	
학과(전공)	
학 번	
중구청에서 아르바이트체험 유무	<input type="checkbox"/> 기체험 <input type="checkbox"/> 미체험
기 타	

<별지9>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15>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small>(제7조 관련)</small>			
설 립 자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 청 내 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 설·장 비		
	⑨ 설 립 연 월 일		
<p>「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서울특별시 중구청장</p>			

<별지16>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교부 · 재교부 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최초사용일	
		재 료	
		교부 사유	
		시보·공고·구보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 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 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시보·공고·구보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70g/㎡
210mm×297mm한지

<별지20>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보호자 (사실상 보호자)	부 성명		생년월일	
	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출생아수	째 자녀		※ 거주기간 (동에서 기재)	개월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H·P	
<p>「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주소 : 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210mm × 297mm(백색용지75g/m²)

<별지25>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신생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현황

연번	신청인 (부, 모)			신생아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년, 월)	비 고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26>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연번	신청인 (부, 모)			신생아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년, 월)	비 고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명	생 년 월 일	출생 순위			

<별지27>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31>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지정서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향 토 문화재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		관 리 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	주소	성명

<별지32>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유 선 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별지33>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4>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



<별지35>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중 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20 ~ 20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직인

<별지36>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37>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3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40>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41>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



<별지45>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발행 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해임일자	비고

<별지46>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장

주 소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위촉기간 . . . ~ . .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별지47> 서울특별시 중구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앞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증		
사 진 (2.5cm×3cm)	발행번호	제 호
	생년월일	
	성명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제4조에 의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뒷면>

1. 본 증을 소지한 자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부정 유통행위의 지도등을 임무로 함.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크기 : 85mm×55mm

<별지48>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별지49>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p>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p>			

<별지5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발 신 : 중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 중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바, 우리구 자치법규 일제점검결과에 따른 일괄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서식 51건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개정함.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구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의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영 제17조에 따르며”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를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를 “인건비,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70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의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p>	<p>제3조(구유재산심의회)①----- ----- -----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p>
<p>제10조(구유재산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10조(구유재산관리계획)①----- -----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p>	<p>제15조(무상사용기간)-----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p>

현 행	개 정 안
<p>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p>	<p>-----</p>
<p>제70조(불용품의 매각)①~③(생략)</p> <p>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⑥(생략)</p> <p>⑦경리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70조(불용품의 매각)①~③(현행과 같음)</p> <p>④-----</p> <p>-----</p> <p>-----</p> <p>-----</p> <p>-----</p> <p><u>감정평가업자</u>-----</p> <p>-----.</p> <p>⑤~⑥(현행과 같음)</p> <p>⑦<u>재무관</u>-----</p> <p>-----</p> <p>-----.</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 구성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상한선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외 법령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을 민간위원으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구 성 : 7~15인 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호선된 민간위원
-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일 40일 전으로 명시하여, 중요자산의 취득·처분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확보함. (안 제10조제1항)
- 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규정하여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방지함(안 제15조)
- 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 → 재무관으로 변경하여 통일성 부여 (안 제61조,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70조제7항 및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를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 ~ ③ (생략)</p> <p>④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u>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④항 생략</p> <p>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⑥ (생략)</p> <p><u><신 설></u></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④항 생략</p> <p>⑤ ----- ----- ----- -----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신 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 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기금 사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인 바, 지역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사업 지원금 범위 변경 (제5조제4항)

-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범위를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60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례 제7조제1항”을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11.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제6조제1항제1호 중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를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를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의 용자받은”을 “기금을 용자받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계획등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계획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를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의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하였거나 용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체현황	기업체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사업체 규모			자산 총액		백만원		총매출액	
상시종업원						사업장면적		건물 : m ²	대지 : m ²
대상업종 및 품목			업종		품목		사회적기업여부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보증서, 신용보증추천, 기타						
대출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input type="checkbox"/> 5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자금	자금용도		총소요액		용자신청액		중구 기존대출 잔액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p>1. 사업계획서 1부</p> <p>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3.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p> <p>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년 ~ 년) 1부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p>									

[별지 제3호 서식]

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 운용관리 상환통보서

(년 월 일 ~ 년 월 일)

가. 총괄

(단위:원%)

대하금 관리현황			금분기 대출현황				금분기 회수현황			비고
계	기대출총액	잔액	융자결정액	대출액	미대출액	사유	회수액	미회수액	사유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단위:원%)

번호	대출 일자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대출 금액	기상환 액	전분기 말잔액	금분기 대출및회수				금분기 말잔액	이율(%)	만기 일자	비고	
							대출		회수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u>조례 제7조제1항에서</u>----- ----- ----- ----- -----.</p> <p>1. ~ 3. (생 략) 4. 「<u>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u>」 제2조에 따른-----. 5. (생 략)</p> <p>제4조(용자신청 및 추천) ① (생 략) 1. (생 략) 2. <u>공장등록증 사본 1부</u> 3. ~ 4. (생 략) 5. <u>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각 1부</u> 6. <u>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 증명서 1부</u> 7. ~ 9. (생 략) 10. <신 설> 11. <신 설></p>	<p>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u>조례 제12조제1항에서</u>----- -----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용자신청 및 추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삭 제> 7. ~ 9. (현행과 같음) 10. <u>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u> 11. <u>사업장 입차계약서</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p> <p>① (생 략)</p> <p>1. <u>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u></p> <p>2. (생 략)</p> <p>3. <u>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u></p> <p>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p> <p>① 기금의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u>사업계획등이 있을 때에는</u> -----.</p> <p>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u>별지 제4호의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3. <u>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u></p> <p>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p> <p>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u>사업계획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u> -----.</p> <p>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u>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월분)											[별지 제3호 서식] 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 운용관리 상환통보서 (년 월 일 ~ 년 월 일)															
가. 총괄 (단위:원%)											가. 총괄 (단위:원%)															
구분		대하금 관리현황			금일 대출현황			금분기 회수현황			비고	대하금 관리현황		금분기 대출현황				금분기 회수현황			비고					
계	기대출총액	잔액	대출액	미대출액	사유	회수액	미회수액	사유	계	기대출총액		잔액	유자결정액	대출액	미대출액	사유	회수액	미회수액	사유							
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단위:원%)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단위:원%)															
업체명	대표자	업종	유자결정액	은행승인액	전월말잔액	금분기 대출및회수			금월말잔액	상환예정일	비고	번호	대출일자	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대출금액	기상환액	전분기말잔액	금분기 대출및회수				금분기말잔액	이율(%)	만기일자	비고
						대출	회수	연체액											대출		회수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용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을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용자한도액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1호)

- 1업체당 2억원 이내 → 제조업체 3억 이내, 그 외 업체 2억 이내

나. 대출상환 편의를 위한 상환조건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3호)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

다. 수용업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작성 관리하도록 개정(안 제8조)

라. 제출 첨부 서류 정리 (안 제4조 제1항)

마. 시행규칙 내용 중 변동사항 정비 및 미비점 개선 · 보완

(안 제3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58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8, 별지 9, 별지 10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계획 요약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행국	()
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자	성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 (직급)	여행경비 (천원)
	한글	영문				
여행자						
기타						

※ 작성요령

1. 여행국의 ()는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 경유국을 말함)을 기재
2. 소속은 부서를 기재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2) 여행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
-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

나.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다. 여행경비

단위 : 천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	(\$)	(\$x일 = \$)	(\$x일 = \$)	(\$x일 = \$)	(\$)	(\$)	(\$)

3. 자료수집계획협의 및 귀국보고서 자료제출확인

가. 여행계획

소속기관			연락처 전화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행자	성명		생년월일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여행국	방문기간						
여행목적							

나. 자료수집계획

다. 귀국 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 사실 (최근 3년 이내 재여행자에 한함)

성 명	여행기간	여행목적	제출여부	
			보고서	자료

작성자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위와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총무과장 (인)

<별지3>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시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가. 사용자

- (1) 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2) 사업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나. 근로자

- (1) 성 명 :
- (2) 생년월일 :
- (3) 주 소 :

2. 근로조건

- 가. 근로처 : 서울특별시 중구 과
- 나. 직 종 : 일용인부()
- 다. 임 금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한 금액
- 라.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근로자 : (인)

<별지5>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카드												
소 속		일용직 최초근무일		사진								
성 명	생년월일									호주 및 관계		
										의 ()		
주소				전 화	자택 :							
				특 기		취 미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격면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6>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전 면 >

신 분 증
(사 진)
(일련번호)
(성 명)

< 후 면 >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2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 5.3cm x 세로 7.3cm

<별지7>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별지9>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의결주문	에 처한다.				
적용법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 호				
징계사유	별지와 같음				
<p>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p> <p>위 원 장 (인)</p> <p>부위원장</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간 사</p>					

<별지10>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직 명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문	에 처분한다.			
사 유	별첨 징계결의서 사본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소속기관장 (인)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귀하</p>				